「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안」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2026년 10월 6일
2. **제 출 자:** 구 미 시 장
3. **회부일자:** 2026년 10월 7일
4. **상정일자:** 2026년 10월 15일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Ⅱ.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용희**
2. **제안이유**

가. 경상북도에서는 '93년부터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융자 지원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의 가속화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기로 협의하였음.

나.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결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기 금 명 :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2) 주관기관 : 경상북도

3) 조성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출연금액 : 금228,000천원

5) 조성목표 : ('93~'17년)2,000억원 → ('27년까지)3,000억원

6)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등의 출연금 및 이자

※ 출연근거 :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나.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인 단체, 농어업 법인, 농어업 관련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2) 지원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 사업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 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 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
-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 지원형태 : 융자지원 100%

•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신청일 기준 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4) 사업추진절차

- ’26. 9월 : 사업지원계획 시달(도)
- ’26. 9～10월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
- ’26.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 ’27.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확인 신청(사업자⟹시)
- ’27. 1～12월 : 사업완료확인서 발급(시)
- ’27. 1～12월 : 융자실행(금융기관)

다. 출연의 필요성

1)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해 ’93년부터 조성 운영중인 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운영

2)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17. 7. 14, 시군 농정과장 회의) 근거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금 출연 필요

라. 출연현황 및 지원실적

1) 구미시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출연실적			출연계획		비고
'93～'25년 출연액	'26년 출연액	누계액 (‘93～’26년)	'27년 출연액	예상누계액 (‘93～’27년)	
7,164	228	7,392	228	7,620	

2) 경상북도 출연현황 및 조성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93~'25년	'26년 (8월말 기준)	'27년	조성총액 ('93~'27년)	조성목표액
재원별	계	285,764	8,406	7,852	294,170	3,000억원 이상 ('27년도까지)
	도	65,924	-	2,500	65,924	
	시·군	120,756	4,352	4,352	125,108	
	금융기관	25,814	900	1,000	26,714	
	이자수익	73,270	3,154	-	76,424	

3) 연도별 지원실적(구미)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6~'17년	'18	'19	'20	'21	'22	'23	'24	'25	'26
농가수(호)	381	230	13	11	8	7	20	14	28	26	24
융자금액	41,094	22,418	2,124	1,720	790	643	2,670	2,756	2,500	2,673	2,80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2)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예산재정과

Ⅲ.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출연안은

- 급변하는 농어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기금 출연 및 융자 지원[1]은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의 소득 증대와 시설 현대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농어업의 자생력과 경영 안정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2027년이 기금 조성 목표의 최종 연도인 만큼, 조성된 기금이 관내 농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을 적극 발굴 및 안내하고, 운용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지역 농업 소득 증대로 확실히 이어지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Ⅳ.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Ⅴ. 토 론 요 지: 생 략

Ⅵ.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Ⅶ.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1) 26년도 구미시 융자 지원 현황 : 28억원(24개 농가)